#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에 관련된 대한이식학회 업무 규정

2011년 12월 9일 제정
2012년 4월 13일 개정
2012년 9월 4일 개정
2014년 4월 18일 개정
2014년 12월 8일 개정
2015년 7월 20일 개정
2018년 3월 28일 개정

1. (목적) 본 업무규정은 해외학술대회 참가자 지원을 위한 대한이식학회의 업무를 규정한다.

2. (참가지원의 원칙) 해외학술대회 참가자의 참가지원은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영기준에 준하여 운영한다.

3. (지원가능한 해외학술대회의 요건) 대한이식학회가 지원 가능한 해외학술대회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대한이식학회 회원이 참가지원을 요청한 해외학술대회로 ATC(American Transplant Congress), TTS(The Transplant Society), TTS 협력학회(CAST(Congress of Asian Society for Transplantation), ESOT(European Society for Organ Transplantation)), ILTS(International Liver Transplantation Society) 혹은 해외학술대회 심사위원회(구성: 이사장, 기획위원장, 학술위원장, 연구교육위원장, 총무)의 승인을 득한 해외학술대회

나. 한국제약협회 혹은 다국적제약협회에서 공고된 해외학술대회로, 대한이식학회가 참가선정단체로 승인이 된 해외학술대회

다. 대한이식학회가 해당 해외학술대회 주최측으로부터 참가지원의 위임장을 받은 경우.

라. 국내 개최 해외학술대회는 해외학술대회로 간주한다.

4. (지원자의 조건) 대한이식학회의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대한이식학회 정회원 혹은 준회원으로, 당해년도 연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나. 해외학술대회 좌장, 연자, 토론자, 발표자 (포스터 발표자 포함, e-포스터 발표자 1인 포함)는 해외학술대회 주최자 측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전문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이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다.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1인 외 공동저자 1인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단, 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발표자(주저자) 1인만 지원이 가능하다.

대한이식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Transplantation

5. (여행사 지정) 대한이식학회는 해외학술대회 참가자의 여행관련 업무보조를 위하여 각 해외학술대회마다 대한이식학회 공식지정 여행사를 지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6. (모집과 선정) 해외학술대회 참가자 모집 및 선정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한다. [별첨 1]

가. 해외학술대회 참가자 신청은 대한이식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학술대회 개최 2달 전에 공지한다.

나. 해외학술대회 참가자는 대한이식학회 기획위원회에서 해외학술대회 개최 1달 전에 심사하여 지원자를 선정한다. 참가자 심사 및 선정결과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다. 지원자는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협회에서 승인된 지원자 숫자(지원가능 숫자) 내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지원자는 해당년도 대한이식학회 해외 주최 학술대회 지원을 2회 초과하지 않은 자로 한다.

7. (지원내역)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의 범위는 실비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이며, 각각의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교통비

A. 항공비는 이코노미클래스로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왕복운임. (보딩패스 반드시 필요)

B. 대중 교통실비는 공항(기차역 등 도착지)-숙소-행사장소간 현지 교통비(학술대회 당 15만원 이내의 공항-호텔간 왕복 현지교통비)

나. 등록비: 사전등록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다. 식대: 1일 3식 지원하며, 현지 식당에서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1식 1장 5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라. 숙박비: 해외의 경우 1박당 35만원 이내까지만 지원한다. 학술대회 1일전부터 학술대회 종료일까지의 숙박지원 하되,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의 부수비용 지원은 불가하다.

마. 정산 시 적용환율은 해외학술대회 시작 전인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외환은행 현금매입 최초고시가 환율을 적용

8. (지원정산) 해외학술대회 지원 정산을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완료되어야 한다.

가. 지원자의 학회 초청장(좌장, 연자, 토론자) 또는 초록채택메일 사본 및 결과 보고서

나. 지원자별 지원 내역 및 영수증 원본

다. 정산을 위한 서류 및 증빙자료는 해외학술대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지원자별 정산액 중 5%는 대한이식학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

마. 정산을 위한 서류 및 증빙자료(보완서류 포함)를 기간 내 미제출 시, 정산액 중 10%를 대한이식학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며, 해당 학술대회 종료로부터 2년간 참가자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9. 본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 운영기준을 따른다.

10. 이 규칙은 대한이식학회 상임이사회 승인 후 바로 시행된다.

**[별첨1]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의 전체일정**

| 일정 | 주요업무 | 내용 |
|---|---|---|
| 매년 11월 | 해외학술대회 참가 희망자 파악하여 참가인원 추정 | 연말에 익년 주요 해외학술대회 참가 희망자 조사 |
| 4 개월 전 | 위임장 요청 | 해외학술대회 사무국에 요청<br>1-2개월 소요 |
| 3 개월 전 | [제약회사] 해외학술대회 지원 신청 | 1) 협회는 1,4,7,10월에 전 분기 학술대회 참가자지원 내역 (학술대회명, 학술대회 주최자, 지원 사업자명, 지원 총액, 지원자수, 지원자 소속 요양기관명 등)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함<br>2) 각 제약회사가 지원을 원하는 회원, 지원가능한 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해외학회 참가자 조율 |
| 3 개월 전 | 해외학술대회 참가자선정단체로 신청 및 선정 | |
| 2 개월 전 |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신청서 접수 및 선정 | |
| 1 개월 전 |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자 선정 | [기획위원회→상임이사회] |
| 1 개월 전 | 해외학술대회 참가자 지원의 내용 및 제반 서류 발송 | |
| D day | 해외학술대회 참석 | |
| 해외학술대회 후 2주 |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자의 서류 및 증빙자료 회수 | 협회는 학술대회 종료 후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실비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실비정산 내역서를 받아 검토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금을 협회로 납부하도록 하여 학술대회 주최자 측(선정된 기관)에 전달 |
| 해외학술대회 후 90일 | 정산 완료 및 영수증 발급 | 참가자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검토 후 규약심의 위원회 심의요청, 지원사 청구 등의 절차로 인해 최종적으로 학술대회참가자 선정기관에 지원금액이 전달되기 까지 최대 90일이 소요 |

**[평가자료]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자 선정을 위한 대한이식학회 기여도 평가항목**

| 선제조건 | | |
|---|---|---|
| 선제조건 | | 설명 |
| 승인된 해외학술대회인가? | 필수 | 대한이식학회에서 위임장 수령 후 확정. |
| 대한이식학회 정회원 혹은 준회원 등록여부 | 필수 | 지원자 심사 전에 정회원 혹은 준회원으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
| 해당 해외학술대회 발표자인가? | 필수 | 증빙자료를 대한이식학회에서 확인. 하나의 연제에 대하여 주저자 및 공저자 포함하여 2인까지 지원가능 |
| 당해년도 대한이식학회 연회비가 납부되었는가? | 필수 | 대한이식학회 연회비 완납 확인 |
| 대한이식학회 기여와 참여 정도의 점수항목 | | |
| 평가항목 | 배정 점수 | 점수 산정방법 |
| 1. 대한이식학회 고문, 자문 및 상임이사 이었나? | 10 | 고문, 자문, 상임이사(현직 및 과거경력자) |
| 2. 해당년도의 각 위원회의 위원인가? | 10 | 현재 재임중인 각 위원회(정규 및 특별)의 위원은 5점을 부여한다. 다수의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에는 1건당 5점을 부여하나, 본 항목의 점수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 3. 해당년도 이전 2년간의 대한이식학회 년회비를 납부하였는가? | 6 | 년회비 완납 1건당 3점을 부여한다. |
| 4. 해당년도 이전 2년간의 대한이식학회가 개최한 정기학술대회(춘계/추계)에 참가하였는가? | 8 | 각 학술대회 참석당 2점을 부여한다. 참여여부는 학술대회 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
| 5. 해당년도 이전 2년간의 대한이식학회가 개최한 정기학술대회(춘계/추계)에 좌장으로 참여하였는가? | 4 | 각 학술대회 좌장 참여당 1점을 부여한다. 단 같은 학술대회에서 2회 이상의 좌장을 담당한 경우에도 1점만 부여한다. |
| 6. 해당년도 이전 2년간의 대한이식학회가 개최한 정기학술대회(춘계/추계)에 구연발표자로 참여하였는가? | 8 | 각 학술대회 구연발표자 참여당 2점을 부여한다. 단 같은 학술대회에서 2회 이상의 구연발표를 시행 한 경우에는 각각 2점씩 부여하나, 본 항목의 점수가 8점을 초과할 수 없다. 구연발표자는 해당 학술대회 프로그램집에 게시된 발표자로 정의한다. |

| | | |
|---|---|---|
| 7. 해당년도 이전 2년간의 대한이식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제1저자 혹은 책임저자로 참여하였는가? | 16 | 각 대한이식학회 게재 논문당 4점을 부여한다. 해당기간 중 게재된 논문의 숫자만큼 점수를 부여하되, 본 항목의 점수가 16점을 초과할 수 없다. 공동 제1저자와 책임저자는 각각의 공저자에게 4점씩 부여한다. 점수를 부여하는 논문의 형식(원저, 증례, 종설, 기타보고 등)에 관계없이 같은 점수를 부여한다. |
| 8. 해당 해외학술대회 회원인가? | 8 | 해당 학회 회원여부인지 확인한다. |
| 9. 해당 해외학술대회에서 자유연제 구연 발표자인가? | 20 | Mini-oral을 포함한 구연발표시간이 명시된 구연발표자인 경우에는 20점을 부여한다. 본 항목은 오직 발표자 1인에게만 부여한다. |
| 10. 제출된 초록에 대하여 지원자가 1인인가? | 10 | 제출된 초록에 대하여 1인만 지원하는 경우에는 10점을 부여한다. |
| 참여 및 기여도 총점 | 100 | 총점이 높은 순서로 지원자를 선정한다.<br>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당해년도 지원경력이 없는 자중에서 3항(연회비 납부실적), 9항(자유연제 구연자), 7항(대한이식학회 게재실적), 6항(학술대회 구연실적), 5항(학술대회 좌장실적), 4항(학술대회 참가실적)의 순서로 항목별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한다. 상기까지의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우선한다. |